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가합547532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可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D

4. E

변론 종결 2016. 4. 29.

판결 선고 2016. 5. 27.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9,492,958원 및 그 중 219,492,742원에대하여 2015. 4. 27.부터 2015. 8. 10.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주문 제1항
2.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5.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5. 27. 접수 제30035호로 마친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B와 피고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6. 5. 체결된 매매계약을 219,492,95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E은 원고에게 219,492,9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1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회사가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데 대하여 원고가 신용보증원금 2억 4,000만원, 신용보증기간 2009. 7. 17.부터 2010. 7. 1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피고 회사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가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피고 회사, B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신용보증원금을 사전구상할 수 있고,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 B은 ① 원고의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 연12%이다.

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09. 7. 17. 하나은행으로부터 3억원을 변제기 2010. 7. 16.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마. 피고 회사의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변제기는 그 후 1년 단위로 연장되었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조건도 1년 단위로 변경되었는데, 2014. 7. 11. 최종 변경된 신용보증원금은 2억 1,600만 원, 보증기간은 2014. 7. 11.부터 2015. 7. 10.까지이다.

바. 피고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2014. 5. 27. 아들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5. 27. 접수 제30035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6.5. 누나의 남편인 피고 E에게 이 사건 제2, 3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7. 8. 접수 제61398호로 피고 E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 회사는 2015. 1. 11. 하나은행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5. 4.27. 하나은행에게 220,149,81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657,07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의 일부에 충당함으로써 대위변제잔액은 219,492,742원(= 220,149,812원 -657,070)이 되었고, 회수금 657,07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1일간)의확정지연손해금은 216원(= 657,070원 × 12% × 1/365(2015. 4. 27.~ 2015. 4. 27.))이다.[인정근거]피고 회사, B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C,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은 연대하여 219,492,958원(= 대위변제잔액219,492,742원 + 확정지연손해금 216원) 및 그 중 대위변제잔액 219,492,74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4.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5. 8. 10.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20%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우선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다.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 회사의 신용보증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 피고 B에 대하여 갖게 된 사전구상금 채권은 신용보증사고일인 2015. 1. 11.에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은 2009. 7. 17. 체결되어 이 사건 증여계약 및 매매계약체결 당시 이미 원고의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사전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고, 그 후 원고의 대위변제로 구상금채권도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B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 및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해지기 전에 발생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참조).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70788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2009. 7. 17.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4. 5. 27. 및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4. 6. 5. 당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는데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기초적 법률관계에 기하여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 내지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구상금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장차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사태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피고 회사는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다가 이 사건 증여계약 및 매매계약으로부터 7개월 이상이 경과한 2015. 1. 11. 연체하기 시작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다시 3개월 이상이 경과한 2015. 4. 27.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하나은행에 대위변제를 하고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② 피고 회사는 2014. 상반기 29,419,289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고, 하나은행과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5. 7. 11.경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대출금채무의

변제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신용보증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주었다. 이에 비추어 하나은행 및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일무렵에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발생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 B은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 E으로부터 부동산의 매매대금 4억 6,000만 원 중 E에 대한 임차보증금 2억 원, 그밖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 4,200만 원,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1,8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대부분을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회사 및 주식회사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및 매매계약 무렵 피고 회사가 부도가 나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피고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 B은 전자의료기기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를 운영하면서 피고 회사, B의 자금을 투입하였는데, 2014. 중반경부터 중국, 인도 등지에서 추진된 원적외선 마사지침대의 판매가 예상과 달리 저조하여 투입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결과 2015. 1. 11.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및 매매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손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C과 피고E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 판사 이진용, 판사 한상술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목록

강원도 원주시 일약 30050㎡ 중 공유자 5분의
3 지분

제2목록

서울특별시 중랑구 대 169.2㎡

제3목록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연와조 평스라브지붕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

1층 94.66㎡

2층 94.44㎡

3층 25.82㎡/㎡

3층 11.66㎡(계단실)

지층 94.66㎡ (밭)